

미래에셋증권 적립식 발행어음 약관

제정 2021. 06. 01.

개정 2023. 10. 12.

제 1 조(약관의 목적)

이 약관은 고객과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간의 미래에셋증권 적립식 발행어음 (이하 "적립식 발행어음"이라 한다) 거래를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용어의 정의)

- ① "적립식 발행어음"이란 계약 기간을 정하고 계약 기간 동안 고객이 정한 금액을 입금하여 그 입금액으로 계속적으로 발행어음을 매수하여 적립되는 발행어음을 말한다.
- ② "월 적립금액"이란 계약 기간 동안 매월 발행어음에 투자되는 금액을 말한다. 다만, 고객은 계약 체결 시 회사가 사전에 고지한 월 적립금액을 정하여야 한다.
- ③ "수익률"이라 함은 고객이 발행어음을 매매함에 있어, 회사가 만기 또는 중도 상환 시 고객에게 원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원금 대비 수익금액의 비율을 말한다.
- ④ "정기자동매수서비스"라 함은 고객이 지정한 회사의 계좌에서 매월 일정한 날짜에 월 적립금액만큼 적립식 발행어음을 매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

제 3 조(거래성립 등)

- ① 적립식 발행어음을 거래하고자 하는 고객은 고객명의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 자금을 입금한 후 적립식 발행어음 매수를 신청하면, 회사는 총 한도내에서 적립식 발행어음을 발행하여 해당 발행어음의 발행금액, 발행일, 만기일, 약정수익률을 전산원장에 기록함으로써 거래가 성립한다.
- ②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고객에게 별도의 실물은 교부하지 않으며, 제 1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산원장에 당해 적립식 발행어음 상세정보를 기록함으로써 발행 및 교부한 것으로 한다.

제 4 조 (가입금액)

적립식 발행어음의 최소가입금액 및 가입한도에 대해서는 회사가 영업점,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바에 따른다.

제 5 조(최장발행기간 및 약정기간)

① 적립식 발행어음의 최장발행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바에 따르며, 고객은 회사의 영업점,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약정기간을 선택하거나 그 범위 내에서 약정만기일을 정할 수 있다.

②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적립식 발행어음의 약정만기일이 도래한 때 당해 발행어음은 자동으로 계좌에 현금지급된다. 약정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에 계좌에 현금지급된다.

제 6 조(적립식 발행어음의 내용)

회사와 고객간에 거래하는 적립식 발행어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고객은 계약기간 동안 회사 영업점, 홈페이지, 정기자동매수서비스 등을 통하여 월 적립금액을 입금할 수 있다.

② 정기자동매수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중 지정매수일(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)의 자동매수시 출금계좌의 잔고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익영업일에 자동매수를 다시 실행한다. 익영업일에도 자동매수시 출금계좌의 잔고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월의 적립식 발행어음은 매수하지 않는다.

③ 회사는 고객이 최초 약정 당일 고지된 적립식 발행어음 수익률을 고객의 계약기간 중 투자되는 적립식 발행어음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며 고객은 계약체결 이후 적립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 할 수 없다.

제 7 조(약정수익금의 지급)

① 수익금 지급 방법은 만기일시지급식이며, 회사는 만기일에 계약기간 동안 투자되었던 각 적립식 발행어음을 각각의 투자기간에 따라 고지된 만기수익률을 적용하여 상환한다. 이 경우 일수산정은 각 적립식 발행어음의 매수일부터 상환 전일까지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한다.

제 8 조(중도상환)

① 고객이 만기일 전에 어음의 상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어음을 전액상환하여 만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초 약정한 수익률과는 별도로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중도상환 수익률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한다.

② 다만,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상환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부상환 기준에 대해서는 회사가 영업점,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바에 따르며, 당초 약정한 수익률과는 별도로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중도상환 수익률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한다.

③ 제 1항과 제 2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차감한다.

제 9 조(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)

고객은 적립식 발행어음을 회사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질권(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,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)을 설정할 수 없다.

제 10 조(약관의 변경 등)

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. 다만,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·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.

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.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

분명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.

③ 회사는 제2항과 같이 고객에게 통지할 경우 "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"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.

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,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(화면출력 포함)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11 조(관계법규등 준수)

고객과 회사는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,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등과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와 관련한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규정 등(이하 "관계법규 등"이라 한다)을 준수한다.

제 12 조(분쟁조정)

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,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 13 조(관할법원)

① 발행어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경우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,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14 조(관계법규 등 준용)

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관 또는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,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.

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'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'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되며, 그 밖에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될 회사의 다른 약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적용된다.

이 약관은 2021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약관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※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